

# 심사보고서

## 【남양주 남부택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92
----------	-----

2024. 7. 18.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9.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7.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7. 18.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남양주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남부택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09.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위·수탁 사무

사무명	사무의내용
남양주 남부택시센터 운영 및 관리	- 택시센터 운영·관리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 택시 운수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 기타 택시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위·수탁 시설

시설명	규모
남양주남부택시센터	- 소재지 : 남양주시 늘을1로 39-36(호평동) - 부지면적 : 2,165㎡ - 건축연면적 : 446㎡(주1동 지상2층, 주2동 지상1층) - 주요시설 :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사무실, 화장실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남양주 남부택시센터				
소재지	남양주시 늘을1로 39-36(호평동)				
시설규모	주1동 2층(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주2동 1층(사무실), 부지면적 2,165㎡ / 연면적 446㎡				
층별	1동	1층	사무실	2동	사무실
		2층	휴게실, 헬스장		
공사비	1,280,312,000원				
개소일자	2020.1.8.				
위탁기관	남양주 개인택시조합				
이용인원	50명/일(2024. 06 기준)				



○ 민간위탁 기간

- 2024. 12. 10. ~ 2029. 12. 09. (5년 간)
- (※ 최초기간 : 2019. 12. 10 ~ 2024. 12. 09.)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남양주시조합)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계약)에 따라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반영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금24,678,000원(2024년 기준)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 594,000원×12월 오수처리시설비(10톤) 관리비 : 220,000원×12월 화재/배상보험료 : 802,000원/년	10,570,000원
시설유지비	건물내부 청소 용역비 : 286,000원×12월 건물외부 환경정비 용역비 : 1,000,000원×2회	5,432,000원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유지관리비 : 187,000원×12월 정수기,안마의자 등 렌탈료 : 325,950원×12월 소모품 구입 및 기타 : 2,520,000원/년	8,675,400원

○ 민간위탁(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택시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남양주개인택시조합에게 재위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경제적 효율성	○택시쉼터 운영의 전문성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원활한 택시쉼터 운영·관리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택시쉼터 이용실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으로 성과 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점검) 및 택시 쉼터 위·수탁협약서 제19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택시 서비스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총 합 의 견	○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남양주 남부 택시 쉼터 운영 관리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남양주개인택시조합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재계약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평가 결과 : “우수” (87.5점)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동의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남부택시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택시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당초 수탁한 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재계약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는 등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 남부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